

고용지원 주요세액공제 완전정복

-김선명 세무사-

고용증대 추가납부 산식(P98)

※2차년도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 1) 청년등 감소인원수 > 전체 상시 감소인원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증가한 인원 수 한도)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1,100 - 700)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1,100)

-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한도) × 1,100]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외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한도) × 700]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증가한 인원 수 한도) × (1,100 - 700)

[참고]고용증대 산식 요약표현

[수도권내 중소기업일 경우]

- 세액공제: 청년증가수(상시증가수 한도) x 400 + 상시증가수 x 700

- 추가납부(전제: 당초공제금액 한도)

2차년도: 청년감소수(당초공제인원 한도) x 400 + 상시감소수 x 700

3차년도: {청년감소수(당초공제인원 한도, 2차년도 추가납부한 인원 차감) x 400 + 상시감소수 x 700(2차년도 추가납부한 인원 차감)} x 2

고용증대 요약 산식 사례이1

3] 계산사례로 알아보기

CASE 3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등 외 증가

구 분	2020년	2021년(기준)	2022년	2023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	5	2	1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1	3	7	7
전체 상시근로자수	3	8	9	8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5-2=3명 증가	3명 x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등 외	3-1=2명 증가	2명 x 700만원 = 1,4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5명 증가	4,700만원

2. 2022년도 공제금액 계산 (4,200만원 공제)

1) 1차년도 공제금액 (700만원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2-5=3명 감소	공제금액 없음
청년등 외	7-3=4명 증가	1명* x 700만원 =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1명 증가	700만원

2) 2차년도 공제금액 (3,500만원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 2021년에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공제금액 곱하여 계산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도에 한번 더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2-5=3명 감소	3명 x 700만원 = 2,100만원*
청년등 외	7-3=4명 증가	2명 x 700만원 = 1,4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1명 증가	3,500만원

3. 2022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2021년도분 1차 공제분에 대한 납부 금액 (1,200만원)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납부금액 계산
청년등	2-5=3명 감소	3명 x (1,100만원 - 700만원) = 1,200만원
청년등 외	7-3=4명 증가	납부금액 없음

4.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 직전 과세연도(9명)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8명) 감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8명)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9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29의7②)

3) 3차년도 공제금액 (3,500만원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 2021년에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공제금액 곱하여 계산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도에 한번 더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1-5=4명 감소	3명 x 700만원 = 2,100만원*
청년등 외	7-3=4명 증가	2명 x 700만원 = 1,4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	3,500만원

※23년도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는 세액공제만 나와 있으나 추가납부금액 7백만원(22년도 대비 인원감소)이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		21		22		23	
	근로자수	근로자 수	증감(20)	근로자 수	증감(21)	근로자 수	증감(22)	증감(21)
청년	2	5	+3	2	Δ3	1	Δ1	Δ4
청년외	1	3	+2	7	+4	7	0	+4
상시	3	8	+5	9	+1	8	Δ1	0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 계산				1차: 3X4+5X7=47	1차: 1X7=7 2차(21): 5X7=35 Δ3X4=Δ12		1차: 0 2차(22): 0 Δ1X7=Δ7* 3차(21): 5X7=35 Δ0	

고용증대 요약 산식 사례02

4 계산사례로 알아보기

CASE 4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등 외 증가 (2019~2020년 고용이 계속 증가 추세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기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	5	9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1	3	4	10
전체 상시근로자수	3	8	13	14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7,700만원 공제)

1) 1차년도 공제금액 (700만원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4-9 =5명 감소	공제금액 없음
청년등 외	10-4 =6명 증가	1명* x 700만원 =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1명 증가	700만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등 외 근로자가 6명 증가하였지만 청년등의근로자 5명 감소하여 1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1))

2) 2차년도 공제금액 (3,500만원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 2020년에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 (4명)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공제금액 곱하여 계산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한번 더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4-9=5명 감소	4명 x 700만원 = 2,800만원*
청년등 외	10-4=6명 증가	1명 x 700만원 =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1명 증가	3,500만원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2,400만원 납부)

1) 2020년도분 1차 공제분에 대한 납부 금액 (1,600만원)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납부금액 계산
청년등	4-9=5명 감소	$[\min(5,4명)] \times (1,100-700만원)$ = 1,600만원
청년등 외	10-4=6명 증가	납부금액 없음

* 2021년 청년등 감소(5명)와 2020년 청년등 증가(4명)

3) 3차년도 공제금액 (3,500만원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 2019년에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 (3명)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공제금액 곱하여 계산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한번 더 공제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4-5=1명 감소	3명 x 700만원 = 2,100만원
청년등 외	10-3=7명 증가	2명 x 700만원 = 1,4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6명 증가	3,500만원

2) 2019년도분 1차 공제분 및 2019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납부 금액 (800만원)

구 분	근로자 수 계산	납부금액 계산
청년등	4-5=1명 감소	$[\min(1,3명)] \times (1,100-700만원) \times 2회$ = 800만원
청년등 외	10-3=7명 증가	납부금액 없음

구분	18(창업)	19		20			21		
	근로자수	근로자수	증감 (18)	근로자수	증감 (19)	증감 (18)	근로자수	증감 (20)	증감 (19)
청년	2	5	+3	9	+4	+7	4	Δ5	Δ1
청년외	1	3	+2	4	+1	+3	10	+6	+7
상시	3	8	+5	13	+5	+10	14	+1	+6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 계산	$2 \times 4 + 3 \times 7 = 29$	1차: $3 \times 4 + 5 \times 7 = 47$ 2차(18): 29	1차: $4 \times 4 + 5 \times 7 = 35$ 2차(19): 47 3차(18): 29	1차: $1 \times 7 = 7$ 2차(20): $5 \times 7 = 35$, $\Delta 4 \times 4 = \Delta 16$ 3차(19): $5 \times 7 = 35$ $\Delta 1 \times 4 \times 2 = 8$					

법인전환시 상시근로자 산식(조특령 제23조 ⑬ 2호)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참고]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시 상시근로자 산식(조특령 제23조
⑬ 3호)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
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
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최신예규(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으로 '20년에 '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으며, '21년에도 '19년 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청년 등	57	54(Δ3)	47	41(Δ13)
청년 등 외	147	185(+38)	173	172(Δ13)
전체	204	239(+35)	220(Δ19)	213(Δ26)

[회신]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계산: 19년 공제금액: $35 \times 700 = 24,500$ / 20년 추가납부: $19 \times 700 = 13,300$ / 21년 추가납부: $26 \times 700 = 18,200$

=> 21년 추가납부금액은 20년 납부금액 한도이기에 13,300

[참고] '20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도과-906(2023.08.28.), 서면-2022-법규법인-3938(2023.09.05.)]

최신예규(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0년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공제하고, 2021년 직전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를 받았으며,
 - 2022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게 됨.
 - 질의법인의 법인전환 전 · 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개인		법인	
	19년	20년	21년	22년
상시근로자수	1	2	2	1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	700(추가공제)	추가납부? (700 or 1,400)

[회신]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 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최신예규(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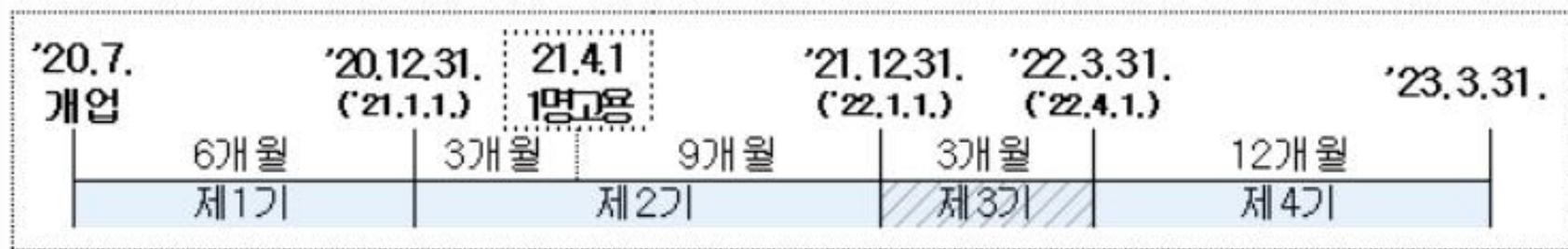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0.7.7. 수도권 내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1.4.1. 직원 1명('청년등 외')을 고용하고, '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29의7 및 §30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

○ 질의법인은 '22.3.30.에 「1.1~12.31.」에서 「4.1.~3.31.」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1.12.31.)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22.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22.3.31.)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법인법§7①,③)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질의1)과 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에 대해 질의



최신예규(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최신예규(조심2023부6839,2023.07.2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신예규(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23년에는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증대를 선택하여 적용

청년근로자 일반공제 선택적용

서면-2022-법규법인-3379, 2023.09.04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직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하였음. 다만, 상시근로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년 상시근로자는 감소될 예정임.

(질의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불가

<2안>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2023.8.28.) 「질의1」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동조항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불가

<2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

청년근로자 일반공제 선택적용

[사례] 3차연도에 청년이 나이에 의해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 선택적용시 비교

[실제 인원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공제합계
청년	4	4	3	
청년외	1	1	2	
전체	5	5	5	
공제금액	51	51	35	137

[일부 근로자 선택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공제합계
청년	3	3	3	
청년외	2	2	2	
전체	5	5	5	
공제금액	47	47	47	141

“해당과세연도 개월 수”에 대한 최신예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2020.12.31)
-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2021.06.16)

※ 참고) 개인 8월 개업 후 12월에 법인 전환(12월 설립등기)

①(개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②(법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1명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총계	-	16명	7명	17명	15명	11명 $[(0+16+7+17+15)/5]$
개인사업자	-	16명	7명	17명		10명 $[(0+16+7+17)/4]$
법인사업자					15명	15명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4)

현행	개정안
<p>□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p> <p>○(환산식) (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p> <p>○(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p>	<p>□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p> <p>○(좌동)</p> <p>○ 근로소득금액</p>

<개정이유>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23년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상시근로자수 계산 관련 개정안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8)

현행	개정안
<p>□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등 제외 -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0.5명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 0.75명 	<p>□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23년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해당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 ⑦이어야 함)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4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정규직 전환 연월일)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	
A. 홍길동(. .)	여, 부	여, 부(2023.02.01)	여, 부	
B. 김갑돌(. .)	여, 부	여, 부(2023.07.05)	여, 부	
C. (. .)	여, 부	여, 부(. .)	여, 부	
D. (. .)	여, 부	여, 부(. .)	여, 부	
E. (. .)	여, 부	여, 부(. .)	여, 부	
나. 세액공제액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⑭ 임금 증가분 합계액 (⑫-⑬)	⑮ 공제율	⑯ 세액공제금액 (⑭×⑮)
A. 50,000,000	35,000,000	5,000,000	20%	1,000,000
B. 25,000,000	35,000,000			
C. ↓	↓			
D. ↓	↓			
E. ↓	↓			
합계 ⑭ 75,000,000	⑮ 70,000,000			

사업 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	대상금액	세액
조세를 면제한다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기 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1호	775	12,000,000	12,000,000
소 계			780		
법인세 액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780 + 784)			790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사업 연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 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산액			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이율 (일변)	기간	금액 (22×23×24)	
1	2021	청년근로자감 소	12,000,000				12,000,000
계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27(9+18+26)				12,000,000			